

韓國目錄規則 4版(草案)에 대한 提言

A Reform about the KCR 4th ed.(Draft)

김 자 후(Ja-Hoo Kim)*

〈목 차〉

- | | |
|-------------------|-----------------------|
| I. 서론 | 3. 1.4 발행사항 |
| II. 용어에 관련된 문제 | 4. 1.7 주기사항 |
| III. 제1부 기술 | V. 제2장 단행본 |
| 1. 편찬보고 | VI. 제21장 접근점에 관한 규칙 |
| 2. 일러두기 | 1. 21.0 총칙 |
| 3. 제0장 총칙 | 2. 21.1 접근점의 선정 |
| IV. 제1장 기술총칙 | 3. 21.2 접근점의 형식과 표기방법 |
| 1. 1.0 총칙 | VII. 결론 및 미래에 대비한 제언 |
| 2. 1.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도서관협회 목록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마련한 韓國目錄規則 4版(草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한 일종의 제안이다. KCR4(草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규칙 전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분인 '제1부 기술' 가운데 '제0장 총칙', '제1장 기술총칙', '제2장 단행본'과 마지막 호인 '제2부 접근점(제21장 접근점에 관한 규칙)'만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살펴 본 결과, 용어상의 문제점, 카드목록규칙에만 적용되는 내용, 문맥상 잘못된 부분, 내용이 서로 상반된 부분,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 그리고 규칙조문으로는 부적절한 부분 등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일일이 개선책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비하여 추가로 요망되는 사항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한국목록규칙 4판, 기술규칙, 접근점, 미래의 목록규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form after detecting out issu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KCR 4th ed.(draft). KCR(Korean Cataloguing Rules) is representative cataloguing rules in Korea, the 4th ed.(draft) of which was prepared by Cataloguing Committee(department of KLA) in 2001.

As a result of this study, a lot of problem, which are glossary, context, inconsistency of the contents, rules applied to card catalog, and others, were found out. Thus, substantial improvements were able to be suggested

Key words : KCR4, access point, description, future cataloguing rules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http://web2.kwangju.ac.kr/~jahookim/>)

• 접수일 : 2002. 8. 16 • 최초심사일 : 2002. 8. 26 • 최종심사일 : 2002. 8. 28

I. 서 론

오늘날 목록편성은 교육현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서관에서도 기술적인 전문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점차 그 영역과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도서관에 소장된 실물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상의 웹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Dublin Core를 비롯한 웹정보자원 목록편성도구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좁은 의미로는 웹자원에 대한 목록)를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OCLC가 주관하는 CORC(Cooperative Online Resource Catalog)를 들 수 있다. CORC는 웹기반 자동화 목록도구이며, 도서관이 전자정보원을 기술하는 레코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통합된 플랫폼으로 계획된 데이터베이스이다.¹⁾

요즘 우리나라는 히딩크신드롬으로 열기가 가득하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고 그 순서를 철저히 지켰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히딩크는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차질 없이 실천함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목록이 제대로 되려면 맨 먼저 자국의 언어와 문자체계에 부합하는 목록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분류표, 자국의 언어와 문자에 기반하는 주제명표(또는 시소러스)를 비롯한 각종 전거파일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첫 단추가 잘 꿰어진 다음 이들을 토대로 국가표준의 서지레코드를 비롯한 각종 MARC 레코드포맷이 만들어 졌을 때 비로소 도서관의 실물장서에 대한 목록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아가 웹자원의 목록, 즉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수단인 더블린 코어와 같은 표준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이러한 표준은 기존의 MARC포맷을 토대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떠한가. 1983년에 만들어진 목록규칙(KCR3)²⁾은 오늘날 거의 쓰임새가 없게 되어 버렸을 뿐 아니라 아직 주제명표를 비롯한 전거파일도 변변한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 즉, 자료유형별 편목규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행본을 비롯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고서 등을 편목하기 위한 각 각 별도의 KORMARC 레코드포맷이 서둘러 만들어 졌는데 이 과정에서 MARC 레코드의 내용표준이 필요하게 되어 자료유형별로 기술규칙(표목은 제외)이 제정되었으며, 그 뿐 아니라 KORMARC 포맷에 기반한 소장레코드포맷, 전거레코드포맷 등이 서지레코드포맷의 뒤를 따랐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필자는 거의 20년 가까이 목록과 관련된 강의를 하였으니 스스로도 신기하기만 하다. 특히 목록

1) "Intergartion of the OCLC Cataloging Service and CORC", Technical bulletin, No. 239 (june 2000). [electronic bulletin board] [cited 4 Oct. 2001]: available from <http://www.oclc.org/oclc/tb/tb239/239.htm>.

2) KCR4(草案)의 편찬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유형의 자료를 전부 취급한 것이 아니라 단행본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표목과 배열규칙(카드목록에만 필요함)은 뒤로 미루고 기술사항만 다루었다. 그러나 카드목록작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오늘날의 현실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연습 강좌에서는 KORMARC포맷의 원칙을 준용하느라고 Tag 1XX(기본표목) 3), 그 중에서도 비교적 까다롭고 난해한 통일표목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었다. 4)

사정이 이러한데도 근래 많은 연구자들이 다른 모든 목록편성 tool들에 우선하는 목록 규칙의 정비와 제정은 외면한 채 웹자원목록에 관한 연구에만 몰두하여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물들이 전문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늦은 감은 있지만 국내 유일의 표준목록규칙인 韓國目錄規則 3판(KCR3)의 새로운 판(韓國目錄規則 4版 : KCR4)이 학계와 도서관계 종사자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거의 20 년만에 햇빛을 보게 되어 무척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국내 유일의 표준분류표인 韓國十進分類法 4版(KDC4) 5)과는 달리 처음에는 草案의 성격으로 공개된 다음, 각 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서 비단 인터넷사이트라는 사이버공간이지만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공청회 전용 게시판⁶⁾을 마련하여 각 계로부터의 의견 개진을 유도하고 있다.

목록편성의 최우선 표준인 목록규칙이 확정되면 MARC레코드포맷 등 그 후속수단들이 지체 없이 정비되거나 새로 제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재를 포함하여 목록에 관련된 기존의 저작물들은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KCR4(草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규칙 전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분인 ‘편찬보고’, ‘일러두기’, ‘제1부 기술(제0장 총칙, 제1장 기술총칙, 제2장 단행본)’, 그리고 마지막 章인 ‘제2부 접근점 제21 장 접근점에 관한 규칙’만을 검토대상으로 삼아서 용어상의 문제점, 카드목록규칙에만 적용되는 내용, 문맥상 잘못된 부분, 내용이 서로 상반된 부분,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 규칙조문으로는 부적절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비하여 추가로 요망되는 사항 등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논리적인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논급해 나가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KCR4(草案)의 규칙개선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이다 보니 논문의 성격이 ‘提案’이지만 내용전개의 혼잡과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提案’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한 경우(예 : ‘...한다.’)가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3)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목의 선정과 형식’의 기재 準據는 원칙적으로는 KCR2가 된다고 봐야 한다.
 4) 최근 수년 동안 목록연습에 관한 교재가 상당수 출판되었는데 한결같이 1XX(기본표목) 기재에 관한 내용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 도서관들의 목록작성 실례를 살펴 본 결과 많은 도서관에서 1XX(기본표목)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5) KDC4는 공청회 과정 없이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일반인들에게 소개되었었는데, 필자가 살펴 본 결과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므로 그 개선권고사항을 전문학술지를 통해 발표{김자후, “KDC(한국심진분류표) 4판에 대한 제언, 《圖書館學論集》第27輯(1997 겨울호), pp. 369-390.}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도서관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문제점들의 개선은 다음 개정판(KDC5)이 나올 때 나 가능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웠다.
 6) KCR4공청회. (<http://www.korla.or.kr/spboard/board.cgi?id=kcr4>). [cited 2002. 8. 8]

II. 용어에 관련된 문제

‘한국목록규칙(韓國目錄規則) 4版’ 즉, KCR4는 사실상 韓國目錄規則 3版(KCR3) 뿐 아니라 韓國目錄規則 2版(KCR2)⁷⁾도 개정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것은 KCR4(草案)의 ‘편찬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KCR3은 記述만으로 著錄을 완결하는 기법을 채택한 규칙”이어서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칙’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표목에 관한 개정은 비단 KCR4(草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記述뿐만 아니라 標目도 함께 다룬 韓國目錄規則 2版(KCR2)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표준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용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신중하게 결정하되 新舊 對照表를 부록에 수록해 놓는 것이 이용에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부록3 : 용어해설’에 변경된 용어를 빠짐없이 수록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부록에 수록된 용어 및 그 해설의 출처나 準據를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문용어의 新舊 對照表

변경 전 용어	변경 후 용어	부록3 수록여부	비 고
기업, 기술부 ?	저록		전판(KCR2,3)에는 대응되는 마땅한 용어가 없다
표목	접근점		
기본기업	기본표목		
서명	표제		
저자명	책임표시		
청구기호	소재기호	무	
주제명표목표	주제명표		
소개어	도입어구	무	
목차(내용주기)	내용(내용주기)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한 바 있는 문제지만 차제에 KCR의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한다. ‘KCR’을 영문으로 풀어쓰면 ‘Korean Cataloguing Rules’로서 그 동안 우리말로는 ‘한국목록규칙(韓國目錄規則)’으로 표현되어

7) 실제 으뜸정원에 나타나 있는 표제는 韓國目錄規則(修正版)이며 발행된 지 35년(1966년에 발행)이나 지났지만, 1983년에 발행된 KCR3에는 표목에 대한 규칙이 없어서 필자의 목록법 관련 강좌 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사실 KORMARC에 의해 편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표목에 대한 국내 유일의 내용표준인 KCR2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왔으나 영문의 'Catalog(u)ing'은 '목록을 편성하는 행위' 즉, 編目을 의미하므로 'Catalog'에 해당하는 '目錄'은 적절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편목규칙'이 타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정필모교수도 이와 같이 주장하였었고⁸⁾, 중국문화권에서도 '編目規則'⁹⁾ 이라고 통용되고 있으며,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도 '編目規則'이란 용어로 통용된 바 있다.¹⁰⁾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고유명칭에 가깝고 그 동안 3판까지 계속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도 目錄規則으로 표현하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으니 개정관계자들에게 바라건대 학계와 도서관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되길 기대한다.

Ⅲ. 제1부 기술(제0장 총칙)

본 논문의 체제 상 '제1부 기술' 앞에 나와 있는 '편찬보고', '일러두기' 도 이 章에서 취급하기로 하되 대상자료(KCR4)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 맨 먼저 다루기로 한다.

1. 편찬보고

'편찬보고'의 주요 특징 중 두 번째를 보면,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목록규칙 정비의 목적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되겠지만 그 동안 기본표목은 청구기호(여기서는 소재기호)의 저자기호 매김의 대상이었으므로 '한국목록규칙'에서는 논의대상이 아닐지 몰라도 목록작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나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¹⁾

세 번째 특징인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동일 개념의 여러 다른 표현들을 빠짐없이 수록한 질 높은 표준전거리스트들(예 : 저자미상고전리스트¹²⁾)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8) 鄭駟謨, 《目錄組織論》, 서울 : 九美貿易出版部, 1993. p.31.

9) 圖書館自動化作業規劃委員會. 中國編目規則研訂小組, 《中國編目規則》. 臺北 國立中央圖書館, 民國 72(1983).

10) 朴奉石編, 《東書編目規則》, 서울 : 國立圖書館, 1948.

11) 필자 제안 : 저자기호사용법에서 저자기호 매김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책임표시(저자에 기본적으로 역할한 제1저자명)로 하며 그것이 미명하지 않을 때는 본표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

12) NCR(일본목록규칙)과 '도서편목법'에는 '무저저명 고전리스트'로 되어있다. 게다가 '도서편목법'에는 대표표현(통일서명)만 나와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록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編, 『日本目錄規則 : 1987年版 改訂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4. pp. 315-327.

② 金南碩, 『圖書編目法』, 대구 : 啓明大學校出版部, 1995. pp. 294-294.

기본표목이나 통일표목은 카드목록체제에서 동일주제의 문헌이나 연관 문헌들을 카드 목록 상에서 한데 모으기 위한 방편이므로 오늘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일러두기

‘3.1 기술부 1’에서 “기계가독목록형식을 고려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야말로 목록규칙 개정의 결정적 이유이자 개정내용의 핵심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핵심적인 개정내용으로 ‘저자의 수만 나와 있는데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열거하고자 한다. 즉 ‘일러두기’ 내에도 나와 있지만(3.2 접근점부 참조)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을 없앤 것, 본표제나 표제관련 정보 중에 포함된 저자명(1.1.6.2 (기술방법)의 5) 참조)이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포함된 발행처명(1.4.2.2 (기술방법)의 3) 참조)을 책임표시 난(欄)이나 발행처 난(欄)에 다시 기재하는 것, 표제가 너무 길어도 줄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규칙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표목으로서의 개인명과 단체명을 식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필요 시 한자명, 생몰 연대, 기타 식별장치를 부기(附記)하지 않는 다는 것¹³⁾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3.1 기술부 1’의 조문 중 ‘국제표준서지기술규범(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에서 규범은 괄호() 뒤로 보낸다. ISBD의 우리말은 ‘국제표준서지기술’이며 KCR4(草案)에도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3.2 접근점부’에서 “이런 점에서 표목의 선정규정을 이 목록규칙에서 제외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삭제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표목’이 ‘접근점’으로 용어만 바뀌었을 뿐 관련 규칙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KCR4(草案)에도 ‘접근점의 선정(21.1 접근점의 선정 참조) 관련 규칙이 분명하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굳이 그렇게 한다면 ‘표목의 선정규정’ 뿐 아니라 ‘표목의 형식과 표기방법’도 함께 거론되어야 형평에 맞을 것이다.

‘5. 부록’에 나와 있는 ‘국명표기형식’(실제는 ‘국명형식’)과 각 ‘언어에 대한 표준부호’(실제는 ‘언어부호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부록 2 : 국명형식’은 KORMARC에 나와 있는 ‘부속서 1 발행국부호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KORMARC에서 이 데이터요소(발행국부호)는 부호화정보필드에서 활용되며 특정 발행국가 자료만을 검색하는데 사용되는 제한탐색자이다. 또한 KORMARC에는 이것 외

13) 이러한 장치는 카드목록의 배열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카드목록이 사라진 온라인목록 중심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목이므로 오히려 접근점 형태결정에 어려움을 주므로 여러모로 불편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명을 비롯한 표목 간의 식별장치에 관련된 연구물이 근래에도 학위논문, 단행본 등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에도 국가를 ‘주제’로 사용(TAG 043 참조)하기 위한 별도의 부호표(KORMARC 부속서 6 ‘외국지역구분부호표’)가 제시되어 있다. KCR4의 ‘부록 2 : 국가형식’은 타이틀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용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국가명의 한글표기(국가명의 외래어표기법)’¹⁴⁾를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둘(KCR4 부록 2’와 ‘KORMARC 부속서 4’) 다 내용은 동일한데 제시된 적용표준(출처)이 서로 다르므로¹⁵⁾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록3 : 언어부호표 역시 용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과 동일한 것이 KORMARC에 제시되어 있으니(부속서 3 ‘언어구분부호표’), ‘부록 2 : 국명형식’과 같은 맥락에서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제0장 총칙

‘제0장 총칙’은 기술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목록규칙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비단 그 내용의 분량이 많지 않지만 ‘일본목록규칙(NCR)’처럼 독립시켜 ‘제0부 총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럴 경우 ‘0.1 목적’에 나와 있는 ‘기술의 표준화’는 ‘저록작성의 표준화’ 아니면 ‘목록편성의 표준화’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0.1.1 적용범위’에서 “기계가독목록에 사용되는 데이터요소도 그 범위로 한다” 라고 하여 앞서 언급한 국가명부호표, 언어부호표를 수록한 것으로 보이나 그럴 경우 이왕이면 발행국부호표를 비롯하여 한국에 국한된 각 종 부호표 등 KORMARC에 적용되는 모든 부호표를 전부 함께 마련하여 수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0.3 목록의 기능’은 Cutter가 주장한 전통적인 카드목록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나마 기술에 관한 것은 없고 접근점(표목)에 국한된 기능이며 그것도 자세히 살펴 보면, 1)의 경우 ‘제1장 기술총칙의 목차’에 제시되어 있는 발행사나 표준번호(ISBN 등)가 빠져 있으며, 2)의 경우는 단지 Cutter가 주장한 전통적인 카드목록에만 적용되는 기능에 불과한 내용으로 오늘날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오늘날은 과거 계산목록시대와는 달리 식별기능보다 검색기능이 훨씬 중요하므로 이러한 현실에 부합되는 ‘목록의 기능’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14) 이것을 MARC레코드 작성 시 ‘국가명부호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안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행국부호’로 사용할 ‘발행국부호표’인지 아니면 주제로 사용될 것(KORMARC 부속서 6 ‘외국지역구분부호표’ 참조)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필자처럼 맨 앞에 제시된 엔트리인 국가명의 한글표기(외래어)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목록규칙’에는 자국어로 표기되는 국가명(외래어)의 표준을 제시하여 표목표기에 기여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KORMARC 부속서 6 ‘외국지역구분부호표’는 미국의회도서관 편 “Geographic Area Code” 라고 한 반면 ‘KCR4 부록 2 : 국명형식’은 그 출처를 ‘ISO 3166’ 이라고 밝히고 있다.

‘04 목록의 구성’과 ‘05 저록과 참조’는 카드목록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2. 용어에 관련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제기호는 ‘청구기호’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07 기술과 접근점의 기능은 성격상 ‘0.3 목록의 기능과 중복될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정의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IV. 제1장 기술총칙

1. 1.0 총칙

‘1.0.0.1(기술원칙)의 1)’에서 “다른 자료와의 서지적 관계를 기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Tillett에 의하면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약 75%가 서지관계를 위한 연결정보를 필요로 한다”¹⁶⁾라면서 링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지적 관계가 중요하지만 과거 카드목록체제에서는 주기사항에서 극히 제한된 것만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전산목록 환경에서는 다행히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무제한적¹⁷⁾ 일 뿐 아니라 하나의 오리지널 서지레코드는 가급적이면 한 곳에서만 작성되어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의 서지적 관계에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기술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KORMARC레코드에도 ‘연관저록필드’라 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KCR4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KORMARC 레코드의 연관저록필드 내용들을 주기사항에 전부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다. ‘1.0.1 기술의 범위’에 기술요소를 소개하면서 총서사항까지만 열거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ISBD의 나머지 데이터요소인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본다.

‘1.0.2 기술의 대상’은 ‘기술의 대상과 기술단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기술단위란 세트물 전체를 서지레코드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개별저작물들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NCR(일본목록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다. Gorman의 ‘HYPERMARC’을 소개한 manual에는 ‘목록자가 세트로서 세트를 목록하든지, 또는 개별적 아이템으로 목록을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지시는 아무데도 없다’¹⁸⁾라고 기술단위의 중요성과 표준적인 기준이 없음을 하소연하고 있다. 따라서

16) Tillett, Barbara B, *Bibliographic Relationship : Toward a Conceptual Structure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in used in cataloging*. Los Angeles, Uni. of California(Ph. D. diss). 1992. p. 190.

17) KORMARC에서는 하나의 서지레코드에 99999 byte의 스페이스를 허용하고 있어서 거의 무제한 적이다.

18) 오디, 패트 저, 남태우 외역, 『미래도서관의 목록법 이론』. 서울 :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1. p. 237.

필자 나름대로 기술단위의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자 하여 '1.0.2 기술의 대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보았다. 다만 여기는 총칙부분이므로 원칙만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단행본부분에서 나타내고자 한다.

<다음>

1.0.2 기술의 대상과 기술단위

- 1) (기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복제물은 그 대본인 원자료가 아니라 복제물 자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 2) (기술단위) 제2장 이하 제16장까지에서 자료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0.3 기술의 정보원'의 내용을 고찰해 본 결과, '1.0.3.1(정보원의 우선순위)'에서 '자료 자체'를 '정보원'으로 고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래에 열거된 정보원의 우선순위에 자료자체 뿐 아니라 자료 이외의 정보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기재하며 다음에는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1.0.5 기술방법 참조)'를 삽입하고자 한다. '그 準據는...중략...기재한다.'를 '자료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토대로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로 고치고 '2.딸림자료'와 '3.자료 자체와 분리 가능한 용기(상자나 함)나 표지 등'은 서로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3번이 2번보다 자료자체와 더 밀접하기 때문이며 또한 3번의 '표지'는 외피로 대체하는데 표지는 '1.자료자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료의...중략...규정한다.'는 바로 다음의 '1.0.3.2(기술사항별 정보원)'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고자 한다.

한편 '1.0.3.2(기술사항별 정보원)'에는 '으뜸정보원 이외에서 얻은 정보는 각괄호([])로 묶어 기재한다.' 라고 나와 있으며 이러한 조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목록의 기능 중 검색기능이 식별기능보다 우선한다면 각괄호([])로 묶지 않는 것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각괄호([])로 묶은 상태로는 접근점 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만약 이것을 즉, 각괄호([])로 묶어진 정보를 접근점으로 제시하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반드시 각괄호([])를 제외시켜야 되므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본표제 등 중요한 접근점이 되는 데이터요소로서 으뜸정보원 이 외에서 취했을 때는 주기사항에 그 출처를 밝히고 있으므로('1.7.3.3' 참조) 각괄호([])를 하지 않아도 식별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괄호([])가 없어진다면 목록의 기능이 과거의 식별중심에서 검색중심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하긴 해도 으뜸정보원 이외에서 얻은 정보를 각괄호([])로 묶어 기재하는 규정은 1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지는 중요한 원칙이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 '으뜸정보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표현은 KCR3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말 신봉자적인 표현으로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학자들 중에는 '기본정보원'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

으나 그것은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 대체표현으로 '우선정보원'을 추천하고자 하니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바란다.

'1.0.4의 1)' 가운데 '나'의 '별표제'는 중요한 접근점에 해당되나 KORMARC레코드포맷에는 독립된 식별기호가 없어서 자칫하면 접근점으로 제시하는데 소홀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시스템 차원에서도 접근점 제시가 용이하도록 향후 KORMARC 개정 시 독립된 식별기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0.5.2(언어와 문자)'에서 첫 줄 '한글이나...중략...적으며'는 '1.0.5.1(기술원칙)'과 사실상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 다음 문장인 '한자는 정자와 약자간의 상호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를 준용하게 되면 카드목록 작성 시에는 시간이 절약될 수 있겠으나 오늘날은 컴퓨터모니터에 직접 입력하므로 약자나 정자의 입력시간에 차이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자가 더 보편적인 형태이므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다음 줄에서 '기술은,'과 '그 자료에...' 사이에 '대등표제, 원표제, 원저자명 등과 같이 특별히 대상자료에 쓰여진 언어와 문자 그대로 옮겨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 문장인 '허용한다.' 다음에 '2.5.1.2의 1)'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나 형태사항의 면수, 권·책수, 크기는 예외적으로 동·양서 공히 영어표기인 p., v., cm로 통일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0.5.2(언어와 문자)'와 '1.0.5.2(로마자의 대문자법)'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

1.0.5.3(로마자의 약어법) 양서에 있어서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이외의 기술사항 기재시,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록(약어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약어를 사용한다.

'1.0.5.11(구두법)의 7)'에 있는 'ISSN번호'는 일반적으로 'ISSN'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번호'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ISSN'으로 고친다.

'1.0.5.11(구두법)의 11)'의 경우 '...것임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를 '것이거나 보기(補記)나 부기(附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로 고쳤으면 한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모든 목록규칙에서 각괄호[]는 으뜸정보원 이외에서 얻어진 정보뿐만 아니라 보기(補記)나 부기(附記)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2. 1.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1.1.1 본표제'의 '1.1.1.1(범위)'를 필자의 소견대로 수정·보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먼저 첫 줄, 즉 ‘(범위)...삼는다.’에 1)부터 7)까지의 내용 중 부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4)의 내용을 나름대로 수정하면 ‘본표제에는 권·호차, 회차, 연·월차 등과 같이 식별 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숫자나 문자도 포함될 수 있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항목별로 구체화하면, 1)은 그대로 두고 ‘2)총서에서 총서번호로 구분되는 개별저작들의 고유표제’를 새로 추가하며, 3)은 다른 항목들과 외연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4)는 이미 위에서 대체내용을 제시하였으며 5)는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 ‘독립적으로 간행되어 독립 편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이들 저작들, 즉 부록, 신평, 속편, 보유, 색인, 번안서 개작서 등의 표제가 모체저작, 전판, 정판, 본판, 원저작의 표제와 달리 개제된 표제’로 고치고 6)은 내용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없어도 전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며 7)의 경우는 ‘언어가 다른 두 가지 외국어를 ‘복수의 언어나 문자로 된 두 종 이상의’로 바꿀 수 있겠다.

‘1.1.1.2(기술방법)’의 ‘4)’는 ‘3)’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 ‘5)’의 내용 중 ‘한국어와...중략...한다.’는 그 다음 문장인 ‘대역간행물인...중략...한다.’의 사례에 해당되므로 삭제하기로 한다. ‘7)’의 셋째 줄에서 ‘있을 때에는’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형어적인 역할을 할 때에는’으로 고친다. ‘8)’의 ‘문법적’은 ‘문맥상’으로 고친다 ‘10)’의 둘째 줄 ‘표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표제(개별표제)’로 고치고 ‘11)’의 셋째 줄에서 ‘각 표제와 책임 표시 사이는’은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각 저작물 기재 사이는’으로 고치고 ‘14)’에서 ‘신평이나...중략...한다.’를 이미 고친 바 있는 ‘1.1.1.1’의 ‘5)’의 내용으로 대체하며 따라서 마지막 문장인 ‘이때...주기한다.’는 ‘이때 전판, 정판, 본판, 원저작의 표제는 주기한다’로 고쳐야 한다. ‘15)’의 ‘문자’는 ‘표제문자와 다른 특수문자’로 그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1.1.5 권차, 회차, 연차표시’ 가운데 ‘1.1.5.2(기술방법)’의 ‘4)’에 나오는 ‘각 권의 표제가’는 내용이 모호하여 ‘각 권별로 개별표제가’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1.1.6 책임표시’에서 ‘1.1.6.1(범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빠진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난해하므로 다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고쳐서 대체하고자 한다.

<다음>

1.1.6.1 (범위)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먼저 주된 책임표시를 기술하고 만약 부차적 책임표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술한다.

- 1) (주된 책임표시에 해당하는 저작역할어) 저, 지음, 글, 편찬, 각색, 개작, 번안, 의역, 작곡, 연주 등
- 2) (부차적 책임표시에 해당하는 저작역할어) 번역, 역, 옮김, 삽화, 그림, 해제, 해설, 감수, 감역, 교열, 원문기고, 후원, 작사 등

‘1.1.6.2 (기술방법)’의 2)’에서 첫째 줄 맨 처음 ‘자료의’는 삭제하고 둘째 줄인 ‘그러나

그 자료 이외의 정보원에서 얻은 책임표시는 주기사항에 기재한다.’는 내용상 모순될 뿐 아니라 없어도 무방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책임표시는 대상 정보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표제 및 책임사항에 기재되지 주기사항에 기재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1.1.6.2 (기술방법)’에서 ‘6)’의 내용은 중복되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고쳐서 대체시키기 바란다.

<다음> 6) 책임표시가 두 개 언어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본문의 언어와 일치하는 것을 취해서 책임표시사항에 기재하고 그 나머지는 주기사항에 기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으뜸정보원에 본문의 언어와 일치하는 책임표시가 없을 경우 으뜸정보원 이 외에서 취할 수 있으면 그것을 책임표시사항에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즉, 본문의 언어와 다르더라도 으뜸정보원에 나와 있는 것을 책임표시사항에 기재한다.

‘1.1.6.2의 7)’에서 ‘책임표시’를 부차적 책임표시와 구분하기 위하여 주된 책임표시로 고치고 같은 맥락에서 ‘8)’ 둘째 줄의 ‘저자’의 경우 공저자 합저자 등 주된 책임표시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주된 책임표시’로 고치기 바란다.

‘1.2.1.1(범위)’에서 ‘2)’의 내용이 난해하므로 구체적인 예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1.2.1.2(기술방법)’의 셋째 줄에서 ‘표준약어형식’다음에 사용 상의 편의를 위해 (부록 1 : 약어표 참조)’를 삽입하기 바란다.

3. 1.4 발행사항

‘1.4.0.2 (복제본)’에서 여기(제1장 기술총칙)는 모든 유형의 자료에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복제본’이란 표현은 ‘제2장 단행본’에서나 사용하도록 하고 총괄표현인 ‘복제물’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며 이러한 예는 여기 뿐 아니라 ‘제1장 기술총칙’의 여러 곳에 나타난다

그리고 ‘발행사항’다음에, 모든 유형의 자료에 적용되도록 ‘또는 제작사항’을 삽입한다.

‘1.4.1.2 (기술방법)’의 첫 줄 ‘자료에 표시된…자료에 기재된’에서 ‘자료’보다는 규칙 전반에 걸쳐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서 ‘정보원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이러한 예는 규칙 전반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표시된…기재된 형식 그대로 기술한다.’는 이미 앞에서 나온 규칙으로 사용 상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한 지는 모르나 규칙의 형식(체제)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러한 경우는 규칙 전반에 걸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 지 논의해 볼만하다.

‘1.4.1.2 (기술방법) 2)’의 시의 경우는… 기술한다’에서 제외된 행정단위명칭은 그것이 없

더라도 식별가능하기 때문인데 오늘날 일반 시(市) 특히 수도권주변의 위성도시들은 행정 단위명칭이 없으면 그것이 시(市)인지 군(郡)인지 아니면 읍(邑)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반 시(市)는 행정단위명칭을 포함할 것을 추천하며, '포함하여 기술되는 행정단위'에 도(道)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道)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므로 제외시켜야 한다. 이상을 토대로 '2)'를 고쳐보면 '2) 행정구역의 단위명칭 중 광역시, 특별시, 도(道)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포함하여 기술한다'가 될 수 있겠다. 사실 문민정부 시절 기존의 행정 단위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 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과 같은 주소가 있을 수 있는데 국내문헌의 경우 구미지역의 문헌들과는 달리¹⁹⁾ 발행지만 기재된 경우는 거의 없고 주소 전체가 나오므로 "맨 앞에 나오는 지명을 발행지로 한다"는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사항은 식별(구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기재하되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규칙을 제정하거나 목록작성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3)'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발행지명을 봐도 모르겠는데 그 이하의 구체적인 주소가 식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이 무언지 모르겠는데 '중구 목정동 18-27'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1.4.1.2 (기술방법) 5)'에서 '예'를 보면 4가지 전부 비슷한 유형이므로 이 중 하나만 남기고 그 대신 내용에 나와 있는 다른 유형에 관한 '예'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4.2.2 (기술방법)의 5)'에서 '배포지와 배포차...중략...아니한다'라는 내용은 해당 조항(1.4.2 발행처, 배포처)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1.4.1 발행지 배포지' 맨 앞쪽('1.4.2 발행처, 배포처' 바로 아래 줄)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보다 더 상위 조항인 '1.4 발행사항'의 맨 앞 쪽(1.4.0 총칙)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를 경우 이 내용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배포년, 보급년, 인쇄년은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²⁰⁾'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4.3 발행년, 배포년' 조항에는 판권년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판권년은 배포년 못지 않은 중요한 데이터요소²¹⁾일 뿐 아니라 '1.4.3'의 조문 내용에도 판권년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1.4.3.2 (기술방법)의 7)'에서 '...기재하며' 다음에 '판권년만 나와 있으면 판권년만 적으며'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양서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실 바로 아래에 예시(, c1981)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양서의 경우 대부분 으뜸정보원에 발행처에 앞서서 발행지(소재지명)를 표기하고 있다.

20) 사실 '배포년, 보급년, 인쇄년,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만약 이것이 나와 있다면 규칙체계 상 '1.4.3 발행년, 배포년'의 맨 앞이나 아니면 그 외 적당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이유는 잘못하여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누락되었다면 이를 상기시키고자 하여 거론하게 되었다.

21) 양서에서는 판권년을 반드시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판권년만 나와 있어서 발행사항에서 유일한 연도정보가 되기도 한다.

4. 1.7 주기사항

‘1.7.3.3. (정보원에 관한 주기)’에서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맨 앞에 ‘본표제를 비롯한 중요한 서지요소를’을 삽입하였으면 하는데, 사실 아래 예들도 전부 본표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조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표제를 비롯하여 책임표시 정도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 ‘1.7.3.4 (상이한 표제에 관한 주기)’에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맨 앞에 ‘본표제에 해당되나 으뜸정보원에 나와 있는’을 삽입하였으면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별표제나 대등표제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3.5 (대등표제와 표제관련정보에 관한 주기)’에서 ‘표제와…중략…주기한다.’ 다음에,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1.1.3.2 (기술방법) 2), 3), 4) 및 1.1.4.2 (기술방법) 3) 참조’를 추가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 놓으면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대등표제와 표지관련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조내용(기술방법 조항의 내용)이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것이어서 이 쪽(주기 조항)이 더 우선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규칙체계 상 적절치 않더라도 사용 상의 편의를 위해 이 쪽에도 포함시키는 것 또한 한 방법일 것이다.

‘1.7.3.5의 1)’에서는 ‘…서 생략된’을 다듬어서 ‘기재되지 않은’으로 고치고, ‘2)’에서는 둘째 줄 ‘ISSN’을 ‘ISBN’으로 고쳐 오류를 바로잡으며, 동시에 아래 예가 ‘ISSN(사실은 ISBN)과 함께 기술한다’라는 조문에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

V. 제2장 단행본

‘2.0.1 기술의 범위’에서 조문 맨 앞에 ‘특정 도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제2장 단행본)은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대상이 ‘도서가 아니라 ‘단행본’이므로 ‘단행본’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물론 의미론적으로 보면 도서가 대부분의 단행본이지만 상호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용어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제2장 단행본’에는 용어의 중요도로 인해 ‘도서나 ‘단행본’이라는 용어가 무척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전부 찾아내어 문맥상 반드시 도서만을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를 ‘단행본’으로 고쳐 사용해야 할 것이다.

‘2.0.2 기술의 대상’에서 타이틀인 ‘기술의 대상’을 ‘기술의 대상 및 기술단위’로 고쳐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1.0.2’부분에서 기술단위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그 곳은 기술총괄부분이므로 개괄적인 내용만 소개하였고, 해당 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章단위로 구분된 자료유형별 세부규칙에서 언급하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유형인 단행본을 대상

으로 논급하고자 한다. 이미 표현한 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KCR4(草案)에는 기술단위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이번 기회에 필자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대상단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실물자료의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나하는 것이다. 일찍이 Michael Gorman 은 현대 도서관에서 世界書誌調整²²⁾(UBC)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대상단위의 국제적 표준달성이라고 하였으나 각 국의 목록규칙들마다 달라서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²³⁾ 고 토로할 정도로 오늘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아직 이것과 관련된 기준이나 표준이 없는 까닭에 각 도서관마다 전부 달라서 종합목록을 유지하거나 서지레코드의 타 도서관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먼저 그 표준이 정립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 보자. 일본은 NCR(1987년 개정판)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독립표제단위로 정해져 있다. 즉, 여러 책으로 구성된 세트물(전집, 선집, 총서, 강좌 등)이나 아니면 ‘이광수단편선집’과 같이 한 책에 독립된 표제를 가진 여러 저작물이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거나 상관없이 각기 고유한 표제를 가진 최소단위의 저작물을 기술단위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광수단편선집’처럼 한 책에 10 여 저작이 구성부분으로 수록되어 있다면 10 여 개의 독립된 서지레코드가 생성된다는 의미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분류기호단위를 추천하고자 한다. 전집, 선집 등은 세트물이지만 대체로 세트 전체가 동일분류기호가 되어 서가 상에서도 한곳에 밀집된다. 그런가 하면 총서나 강좌로 불리는 것들은 세트 전체가 한 번에 발행되지도 않지만 개별저작마다 분류기호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서가 상에서도 한 곳에 밀집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의 서지레코드는 하나의 분류기호만 가져야 하므로 세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개별저작물 단위로 서지레코드가 작성되게 되며, 한 책에 여러 저작물이 수록된 경우는 구성된 저작단위로 분류하는 경우는 없고 한 책 전체에 해당하는 분류기호가 부여되므로 결국 책 단위로 목록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리에 따라서 ‘2.0.1 기술의 대상’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데, 특히 ‘1)부터 9)’까지는 앞서 필자가 정한 기술단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지게 된다.

<다음>

2.0.2. 기술의 대상 및 기술단위

22) 그 동안 국내에서는 ‘世界書誌統整’이라 하였고, 여기(KCR4 草案)에는 ‘世界書誌制御’라고 표기되어 있다. ‘世界書誌調整’은 일본에서의 표현인데 필자도 ‘世界書誌調整’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23) 岩下康夫, 日本目錄規則(NCR)에 있어서 書誌記述의 對象과 書誌記述, 《知識處理研究》第 卷, 第 1호 (2000. 8). p. 45.

원칙적으로 단행본을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세트물인 경우 전체가 동일분류기호(대체로 전집물, 선집물이 여기에 해당)를 가지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서지레코드를 생성하고, 포함된 개별저작들이 각기 다른 분류기호 대체로 총서물나 강좌물이 여기에 해당)를 가지면 개별저작마다 각기 별도의 서지레코드를 생성한다. 그리고 한 책에 여러 저작물이 수록된 경우는 책 단위로 서지레코드를 생성한다.

- 1) 하나의 저작물만 수록된 한 책
- 2) 여러 개별저작들이 수록된 한 책 전체
- 3) 종합표제 또는 대표표제를 지닌 세트물 전체(예 : 전집, 선집)
- 4) 세트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물(예 : 총서나 강좌의 개별 저작물)
- 5) 물리적으로 두 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구성 전체가 하나의 저작물인 단행본(예 : 백과사전)
- 6) 물리적으로 모체물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간행되고 동시에 고유표제를 가진 저작물(예 : 별책부록, 보유)
- 7) 합철본
- 8) 단행본이 주된 구성요소인 복합매체자료
- 9) 연속간행물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고유한 표제를 지닌 별책

“2.0.3.1 (정보원의 우선순위)”에서 첫 두 줄, 즉 ‘정보원…중략…기재한다.’를 조정·변개 해서 다듬으면 ‘원칙적으로 정보원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기술하며, 자료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토대로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가 될 수 있다.

‘1.’에서 裏標題面(양서에서 판권면이 되는 곳)과 판권면은 사실상 동일개념이므로 둘 중 덜 관용적인 裏標題面(이표제면)을 삭제하고, ‘2’와 ‘3’은 유사한 항목이므로 한데 묶어 ‘2’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4’는 ‘3’이 된다. 그리고 ‘1.0.3.1’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4. 자료 자체와 분리 가능한 딸림자료, 책곽, 외피 등’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며, ‘5’에서는 ‘도서’를 ‘단행본’으로 고치기 바란다. 마지막 줄에서는 ‘대신 사용한다’를 ‘으로 간주한다’로 고쳐서 의미를 바로잡고자 한다.

“2.0.3.2 (기술사항별 정보원)”은 ‘(기술사항별 으뜸정보원)’으로 고쳐서 의미를 바로잡고자 하며 ‘1)부터 5)’까지는 일단 ‘도서’를 ‘단행본’으로 바로잡은 다음 ‘(1.0.3.1.)’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4)와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고치기 바란다.

- 4) 형태사항 : 그 단행본 자체, 책곽, 외피, 딸림자료 등
- 5) 총서사항 : ‘4)’와 동일

“2.0.5.2 (언어와 문자)” 조항 바로 다음에 필자가 이미 앞에서 새로이 제시한 바 있는 로마자의 약어법을 “2.0.5.3 (로마자의 약어법)”의 형태로 삽입해야 타당할 것이다

Ⅵ. 제21장 접근점에 관한 규칙

오늘날의 목록은 검색기능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KCR4(草案)은 막연한 표현일지 모르나 ‘접근점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다른 목록규칙들에 비해 분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편이다.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21장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내용을 논급해 보면, ‘21.1 접근점의 선정’과 ‘21.2 접근점의 형식과 표기방법’에서 동일한 접근점인 경우 정보원이 동일해야 하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기술부에 기재된 것’과 ‘기술대상 자료에 기재된 것’을 별 구분 없이 넘나들면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내용이므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것이 더 적합한 지를 따진다면, 전반적인 규칙 내용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기술부에 기재된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부에 기재된 것’은 목록규칙을 적용하여 표현된 것이므로 규칙적용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1. 21.0 총칙

‘21.0.2 접근점의 종류’의 ‘6) 발행처’는 용어의 일관성과 통일을 위하여 ‘발행처명’으로 고치고, ‘21.0.3 접근점의 정보원’의 ‘2)’는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2) 채용하고 있는 각종 전거파일(주제명표, 시소러스, 인명전거파일, 단체명전거파일, 무저자명고전리스트 등)에서의 다양한 표현들’로 고치기 바란다.

2. 21.1 접근점의 선정²⁴⁾

‘21.1.1 표제’의 전체 내용은 그대로 따를 경우 범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하고자 한다.

24) 접근점의 선정에 있어서 목록규칙에는 기본적인 것들을 규정해 놓아야 하겠지만 사실 오늘날과 같은 온라인목록환경에서는, 앞서서도 논급한 적이 있지만, 접근점의 선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카드목록환경에서는 접근점이 하나 더 늘어나면 카드 한 장을 더 만들어야 하니까 돈과 시간이 더 들었으므로 표목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좀 다른 예기지만 앞에서 필자가 참조개념이 필요없다고 한 것도, 참조개념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카드목록시대에 완전서지카드보다 참조카드를 만드는 것이 도서관 입장에서 볼 때 더 용이하였으므로 참조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으로 이용자들은 더 불편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다음>

-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재된 표제(본표제, 별표제, 대등표제, 총서의 개별표제 등 : 본표제 중에는 종합표제나 대표표제도 있음)
- 2) 판사항에 기재된 표제(특정 판에만 해당되는 표제)
- 3) 총서사항에 기재된 표제(총서표제)
- 4) 주기사항에 기재된 표제(원표제, 정편의 표제 등 서지적 연관 문헌의 표제 등)

‘21.1.2 인명’에서 첫 3줄의 내용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여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21.1.1 표제’에서처럼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기술부에 기재된 인명 중에서 접근점으로 선정한다. 접근점으로서의 인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로 고치기 바란다. 아래 ‘1) 본표제와 책임표시에 기재된 인물’은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동시에 표기상의 통일을 위해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재된 인명’으로 고치기 바라며 동시에 ‘2), 3), 4)’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인물’은 마찬가지로 공히 ‘인명’으로 고쳤으면 한다.

‘2.1.1.3 단체’도 일단 ‘단체명’으로 고치고 ‘21.1.1 표제’ 및 ‘21.1.2 인명’부분과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다음과 같이 고치기 바란다.

<다음>

21.1.3 단체명

기술부에 기재된 단체명(회의체 포함) 중에서 접근점으로 선정한다. 접근점으로서의 단체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재된 단체명
- 2) 특정 판 또는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에 기재된 단체명
- 3) 총서의 저작자로 기재된 단체명
- 4) 주기에 기재된 단체명

3. 21.2 접근점의 형식과 표기방법²⁵⁾

‘21.2.1 형식’은 총론부분으로 이 곳의 규칙은 ‘21.2 접근점의 형식과 표기방법’ 전체에

25) 오늘날의 검색환경에서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망라적 탐색방법을 택할 것으로 본다. 필자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면 (완전)일치검색은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편이고 시스템에 제시된 검색요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키워드검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망라적으로 탐색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히트된 문헌들의 간략서지가 나타나므로 그 중에서 살펴 보면 일치검색을 원했던 문헌도 대부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그렇게 번거로운 것도 아니다. 물론 가끔씩은 정도율을 높이기 위해 불연산자와 절단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기간이나 언어와 같은 제한탐색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이 필자와 같은 탐색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되며 접근점 마련 시에 이상과 같은 탐색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적용되므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물론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기술부에 기재된 형식(표현)을 접근점으로 하는 것을 원범으로 삼는다’는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그 중, 즉 기술부에 기재된 형태 중에는 으뜸정보원의 것이 그대로 기재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기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²⁶⁾ 일반 이용자들이 하여금 자료 자체에 표기된 형태와 다른 형태, 즉 기술부에 기재된 형태만을 접근점으로 하여 검색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봤을 때, 기술사항의 형태와 정보원의 형태가 다를 경우 정보원에 표기되어 있는 그대로의 형태도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록규칙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여 ‘21.2.1 형식’의 머리말 부분 즉 ‘인명을… 중략…한다.’는 그대로 두고 ‘도서관에…중략…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쳤으면 한다.

그리고 좀 다른 관점이지만 서양인명의 경우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한 인명, 즉 정보원에 나와 있는 형태 그대로도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것을 접근점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²⁷⁾

<다음>

그러나 필요하다면 정보원에 나와 있는 형태 그대로를 접근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예 :

관제를 포함한 표제

관사를 포함한 표제 (양서)

회차(연차 포함) 등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우의 표제

서양인명의 경우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한 인명

단체명이나 발행처명 등에서 앞 뒤에 불가피하게 연결된 문구를 포함하여 표현된 형태

‘21.1.2 인명’의 ‘1)’ 다음에 ‘(형식)’을 삽입하고 ‘2)’ 다음에 ‘(대상)’을 삽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2)’의 ‘형식’ 대신에 ‘표현(필명, 예명, 별명, 호, 자, 법명, 세례명, 외국어표기명, 연호 등)’을 삽입하며, ‘상이한.. 중략.. 연결된다’ 는 카드목록에서만 필요하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3)’은 ‘2)’에 준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되 ‘2)’에서는 보다 다양한 ‘예’를 제시하도록 요

26) 표제명, 저자명 등을 기술사항에 표기할 때 목록규칙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태를 재조정하는 것은 여러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카드목록 상에서 관련 문헌(주제, 표제, 저자명 등)을 한데 모이게 하기 위한 전통적인 목적이 지배적일 것이다. KCR4(草案)에서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배제시킨 대표적인 예가 통일표제를 없앤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기술사항의 근본목적이 식별(타 문헌과의 구별)이라고 전제한다면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표기해야 하며, 형태를 바꾸어 표기하는 것은 기술의 식별기능을 감소시키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27) ‘샤론 스톤’이 쓴 책을 저자명으로 찾고자 하는 이용자가, 물론 정보원에도 ‘샤론 스톤’으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목록규칙을 적용하여 재조정해 놓은 접근점인 ‘스톤, 샤론’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구한다. ‘21.2.1.3 단체명’의 ‘동일기관..중략..연결된다’ 또한 카드목록에서만 필요하므로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1.2.2.2 인명’의 ‘3’에서 ‘저자의 국어관습에’를 ‘저자명이 표기된 언어관습에’로 바꾸기 바란다.

‘21.2.2.3 단체명’의 ‘1’에서 ‘이 때...중략...연결한다.’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것은 카드목록시대에 카드 상에서 정부간행물들을 국별로 유취시키기 위한 장치였으나 이것은 통일표목의 성격으로 KCR4(草案)의 ‘편찬보고’ 부분에 나타나 있는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도 상반될 뿐 아니라 굳이 그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개발을 통해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형식으로 종교서적과 법률서적도 있는데 함께 다루지 않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21.2.2.5 분류기호’의 ‘기호를...표기한다’를 ‘기호형식을 취한다’로 바꾸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21.3 참조에’ 전개된 내용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앞서서도 누차 언급했지만 카드목록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Ⅶ. 결론 및 미래에 대비한 제언

지금까지 韓國目錄規則 4판(KCR4)을 살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와 논리적인 해설을 곁들여 가면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韓國目錄規則 4판(KCR4)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시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대상단위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분류기호단위로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자 한 것이고(‘2.0.2 기술의 대상 및 기술단위 참조),

둘째, 정보원(기술대상자료)에 표기된 그대로를 접근점(검색점)으로 제시해도 좋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제안한 점이다.(‘21.2 접근점의 형식과 표기방법 참조)

한편 본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서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흔하게 발견되었고, 또한 예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 규칙(KCR4)의 조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정·보완하길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韓國目錄規則 4판(KCR4)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미래에 대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 영미계 일각에서는 미래의 목록에 대비하여 OPAC이나 WebPAC에 적합한 편목

표준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⁸⁾ 그러한 것들의 주요한 공통점은 전통적인 목록규칙과 MARC레코드구조와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그들처럼 목록규칙과 MARC레코드구조와의 통합을 시도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KCR4가 확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KORMARC레코드구조의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 국내 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KORMARC의 경우 KCR4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KCR4가 확정된 이 후에도 계속해서 KORMARC의 정비를 미룬다면 KCR4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에 불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KORMARC의 개정이 늦어질수록 도서관에서는 그만큼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제언은 KCR4 개정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관계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사건이므로 그 가운데는 타당성과 보편성이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韓國目錄規則 4판(KCR4) 관계자들은 옥석을 제대로 가려 신중하게 참고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논문은 KCR4(草案)와 함께 비교·대조하면서 읽어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K C I

28) 대표적인 예로는 로울리와 킬렛의 'AACR3 이론', 고먼의 'HYPERMARC이론', 킬렛의 'MARC III 이론', 그리고 'HYPERMARC-Manual'을 들 수 있다.